



금융위, 커버드 본드 발행법 제정(안) 입법예고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 확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「금융회사의 커버드 본드(Covered Bond)¹⁾ 발행법 제정(안)」을 입법예고 함.

- 2011년 6월 29일 ‘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’의 후속조치로 「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 발행 모범 기준」이 마련되었으나 파산절연 및 우선변제권 보장을 위한 구조화 비용 문제, 우선변제권의 법적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커버드 본드의 법제화 요구가 상존하였음.
- 커버드본드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금융회사의 조달비용이 절감되고, 위기 시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 지고, 만기연장을 통하여 장기·고정금리 대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가계 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■ 이번 제정(안)에는 커버드 본드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, 기초자산 집합, 등록 및 발행, 우선변제권, 공시 및 감독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됨.

- 적격 발행기관은 은행(산은·기은·농/수협 포함), 주택금융공사, 정책금융공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1,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, BIS자기자본비율 10% 이상의 자본비율, 자금의 조달·운용구조,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갖추어야 함.
- 커버드 본드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 집합은 기초자산, 유동성자산, 기타자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 최소담보비율 105% 이상이어야 함.
-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계획과 기초자산 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 이후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8%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(잠정안: 4%) 내에서 커버드 본드 발행이 가능함.

1)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 집합(cover pool)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 청구권(dual recourse)을 보장하는 채권을 말함.

-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커버드 본드 소지자(우선변제권자) 등이 기초자산 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유하며, 우선변제권자가 기초자산 집합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 무담보 선순위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함.
- 발행기관은 커버드 본드의 기초자산 집합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, 담보유지비율 및 자산의 적격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감시를 위하여 기초자산 집합 감시인을 선임해야 함.
- 발행기관은 커버드 본드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모든 리스크를 감안한 기초자산 집합의 현재가치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.

(「금융회사의 커버드 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」 입법예고, 금융위, 10/23)